

등록번호	관광경제과-39052
등록일자	
결재일자	
공개구분	부분공개

			부재대결	
협조자				

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
2011 그린홈(Green Home) 보급사업 지원계획



평창군
 관광경제과

2011 그린홈(Green Home) 보급사업 지원계획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11년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
- 사업기간 : 2011. 10월 ~ 12월
- 사업목적
 - 정부에서 장려·지원하는 그린홈 보급사업에 지방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
- 사업량 : 신재생에너지센터 승인 그린홈 5가구 (지열)
- 지원대상 : 정부보조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려는 자
- 사업비 : 20,000천원(4,000천원/가구당)

구분	가구수	사업비(천원)					
		총계	정부보조	지방비 지원금(도3 : 군7)			자부담
				계	도	군	
지원규모	5	121,814	66,814	20,000	6,000	14,000	35,000

※ 기 지원실적

1. 2009년 그린홈(빌리지) 사업으로 용평면 도사리(태양열) 10가구
2. 2010년 녹색마을 사업과 연계 평창읍 지동리(태양열)5가구

□ 에너지원별 지원기준 및 추정 소요 사업비

구분	형식	지원기준	단가(천원)	사업비(천원)				비고
				계	국비	지방비	자부담	
지열	밀폐형	17.5kW	1,870/kW	32,725	16,363	4,000	12,362	전문기업 실제 사업비 2,300~2,600 천원예상

□ 지원내역

- 지열 :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연중 15℃ 지열을 가정 냉·난방에 이용
- 개요 : 냉·난방용 지열 17.5kW (5RT) 이하(※ 1RT=3.5kW)

형 식	지원범위	단 가	정부지원 (50%)	지방비지원(천원)			비 고
				계	도비	시군비	
냉난방용 지열	17.5kW 이하	1,870/kW	935/kW	4,000	1,200	2,800	단독주택기준
		1,260/kW	630/kW				공동주택기준

- 설치 기대효과 : 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외부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, 월간 냉·난방 비용 약 30만원 사용기준 연간 1,675천원 절감효과(히트펌프 COP 난방 3.2, 냉방 4.0, 보일러등유 발열량 8,350kcal/ℓ, 단가 1,000원/ℓ, 냉방시 주택용 전기요금 기준)

○ 지원대상가구 현황

분야	용량	사업비(천원)				전문기업	대상가구	주소
		계	국	지	자			
지열	17.5	23,317	13,317	4,000	6,000	(주) 조은에너지	이시훈	봉평면 무이리 1010-10
지열	17.5	24,985	12,985	4,000	8,000	(주) 한일엠이씨	장광례	대화면 신리 290
지열 (1차)	17.5	26,930	13,930	4,000	9,000	(주)에너지솔루션즈	서영화	용평면 속사리 154-1
지열 (1차)	17.5	23,300	13,300	4,000	6,000	(주)케이씨이앤씨	김정윤	방림면 방림리 1775
지열 (1차)	17.5	23,282	13,282	4,000	6,000	(주)휴다임건축사사무소	정태시	대화면 하안미리 50

□ 지원검토

○ 선거법 검토

- 관광경제과-34116호로 동 사업의 선거법 저촉여부를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한 결과 「중앙행정기관의 지침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·개발·보급 촉진법 제27조」에 따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음(2011.09.16.).

○ 사업의 필요성

- 저탄소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평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활동을 장려 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,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군의 책무에도 부합하며,
- 2011년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지원계획(강원도)에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.

○ 사업추진 시 문제점

- 신재생에너지 보급·확산에 기여하고자 정부 승인(지원확정)을 받은 가구에 한하여 지방비를 추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정부(신재생에너지센터)의 추진일정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,
- 군은 2011.06.15.(1차-3가구), 08.30.(2차-2가구) 2차에 걸쳐 지원대상자를 통보 받음에 따라 미리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결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,
- 사업대상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부득이 보조결정전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고, 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·확산을 위해 선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 발생

○ 검토의견

-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은 정부 보조금이 50%이상으로 민간부분에서 정부 보조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,(사업비 부담)
- 정부 추진일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군의 보조금 지급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전 군과 협의하여 지방비 확보를 위한 절차 이행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함.(사업신청 공고에 따른 신청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).
- 그러나 2011년 사업의 경우 사업신청 전 군과 미리 협의한 사항이 없어, 확정대상자를 통보 받은 후 예산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비 확보가 늦어졌고, 현 시점에서 보조사업의 추진하는 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부적절 하기는 하나, 민간부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홍보 등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.

□ 추진일정

-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: 2011.11.11.한(대상자⇒군)
- 보조결정통보 : 2011.11.18.한(군⇒대상자)
- 현장확인 및 정산 등 : 12.31.한
 - 완료보고 및 설치확인 등 센터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보조사업에 한해 보조금 지급
 -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·설치·관리에 관한 기준 적용